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운영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입국 관련-

1. 민변은 2016. 7.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수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신체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에 대한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나.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 그 이유는 국정원으로부터 종업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면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인지?

다. 수용이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인 경우 피수용자와 수용자는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수용자 본인이 아닌 수용기관인 국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피수용자의 의사를 신뢰한 근거는 무엇인지?

라. 수용기관에 의한 피수용자의 인권침해가 문제되어 진정된 사안에서 피수용자로부터 직접 의사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의사

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마. 민변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른 인신구제청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의 직권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피수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수용이라 하더라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인지?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바. 본 진정 건 처리의 구체적인 경과는 어떠하였는지?

사. 본 진정 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피수용자와 관련한 진정 사례는 얼마나 존재하는지?

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피수용자와 관련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건 중 기각, 각하, 구제의 각 비율은 어떠한지?

2. 탈북이탈주민의 수용과 관련하여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권고의

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 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가. 권고의견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는지?

나. 2016. 4. 7. 입국하여 8월까지 수용되었던 것으로 발표된 북한해외식당 종업원의 수용기간이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지?

다.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위 권고의견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보는지?

라. (현행 수용형태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피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직권조사할 의향은 있는지?

3. 민변이 UN에 제출한 긴급청원에 따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대한민국 정부에 12명 종업원의 구금과 관련하여 구금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 12명의 종업원은 북한이탈주민법 상 조사와 교육을 마치고 2016. 8. 8.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신체적 제한 없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 따라서 제출된 특별절차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COI는 북한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탈북자는 이러한 인권침해로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탈북자를 잠재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호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행정적인 성격이고 대한민국에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이는 형사적 성격의 조사가 아니며 이들을 보호하고 행정적인 평가를 위한 시설임을 밝힌다. 따라서 12명의 종업원이 보호센터에 있는 것이 구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12명 종업원이 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이 사실상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수용함에 있어 사전에 보호와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수용의 기간, 목적, 평가 내용 및 인권침해 발생시 가능한 구제방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자의적 구금에 해당되지 않고,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힌다. 뿐만 아니라 보호센터에 수용되는 탈북자들은 인권보호관에 의해 법적 상담이 가능하다. 인권보호관은 탈북자를 1대1 면담을 하고, 보호센터 내 조사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며, 탈북자들에 필요시 언제든지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센터 안에서는 텔레비전 시청과 신문 구독 등이 가능해 12명의 종업원은 자신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안전과 정신적인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4. 12명 종업원의 보호센터에서의 임시 보호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근거한다.
5. 민변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016. 5. 24. 기일이 진행되었으며, 12명 종업원이 재판에 출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사를 보인바 있으며, 같은 이유로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요청도 거부하였다. 12명 종업원이 자신들에 대한 법적권리를 행사하는 바, 정부는 이에 반하여 강제할 수가 없다. 또한 이들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들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6. 9. 9. 재판부는 민변의 인신구제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민변 변호인단이 대리하는 청구자들이 12명 종업원의 가족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

문이고, 12명 종업원이 보호센터에서 수용해제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법관이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완전한 독립성과 중립성에 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부속법령 등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

6. 결론: 12명의 종업원은 자유의사로 보호센터에 보호를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여 이들을 잠재적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대한민국 정착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보호센터에서의 조사과정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의적 구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12명 종업원이 인신구제청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이들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며 이것이 국제인권기준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현재 12명의 종업원은 대한민국에서 보통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신체적 제약도 없이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끝.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답변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나.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이를 구금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수용기관이 선임한 인권보호관이 아닌 변호인 자격을 가진 다른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교통권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라. 보호센터에서의 조사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을 수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답변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2016. 10.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